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19. 1. 1. 개정 : 2020. 3. 1. 개정 : 2020. 7. 22. 개정 : 2021. 4. 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44조 및 교학규정 제40조~43조에 규정한 다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공 :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배정된 전공이다.<개정 2020. 7. 22.>
2. 다전공 : 학생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주전공 외에 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 대학교에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부전공이 있다 <개정 2020. 7. 22.>
3. 복수전공 : 주전공 이외의 타 전공을 소정 학점 이수하면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제도이다.<개정 2020. 7. 22.>
4.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참여하여 가상의 학과(전공)를 구성하고, 참여학과의 기존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정 2020. 7. 22.>
5.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참여하여 가상의 학과(전공)를 구성하고,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이다.<개정 2020. 7. 22.>
6. 자기설계전공 : 학생 스스로 2개 이상의 전공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융합하여 자신만의 전공 교육과정을 설계 후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설 2020. 3. 1.><개정 2020. 7. 22.>
7. 부전공 : 주전공이 아닌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학위증에 표기하는 제도이다.<개정 2020. 7. 22.>

제 2 장 복수전공

제3조(신청자격) 복수전공의 신청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개정2020. 7. 22.>

제4조(복수전공 학과의 범위) 우리 대학교 학생은 사범계열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에 대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2.>

② 교직 복수전공신청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삭제 2020. 7. 22.>

④ <삭제 2020. 7. 22.>

제5조(시기)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재학중 정해진 기간내에 복수전

학과 의 학부(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별지서식 1] 복수전공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개정 2020. 7. 22.>

제6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내에 주전공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복수전공 이수 희망학과(전공)의 전공이수 학점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개정 2020. 7. 22.>

1.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2018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42학점 이상

2.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36학점 이상

② 해당 전공과목을 주전공으로 이수 할 때 이미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때는 그 학점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③ 복수전공 이수자가 주전공의 소요 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소요취득학점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이를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22.>

④ 복수전공 이수도중에 포기하면 기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인정학점)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 교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소속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공통과목에 한하여 제한없이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점을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0. 7. 22.>

제8조(복수전공의 포기)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별지서식 2]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7. 22.>

제9조(수강지도)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과장과 복수전공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졸업사정) ① 복수전공 이수 인정 희망자가 주전공을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전공 이수시 해당 학기에 졸업사정을 하고 졸업은 복수전공 이수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② 복수전공인정여부는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1조(학위수여) ① 복수전공 이수 인정을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개정 2020. 7. 22.>

② 복수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이수년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개정 2020. 7. 22.>

제12조(제증명)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사실을 포기하여 발급한다.<개정 2020. 7. 22.>

제 3 장 부전공

제13조(대상) 부전공 이수 대상은 재학 중 사범계열 및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

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에 대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개정 2020. 7. 22.>

제14조(신청절차) 부전공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부터 재학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전공학과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별지서식 1] 부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개정 2020. 7. 22.>

제15조(이수 및 인정) ① 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내에 주전공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과 부전공 이수 희망학과의 전공과목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소속 학부 내에서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공통과목에 한하여 제한없이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0. 7. 22.>

1.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2019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21학점 이상

2.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18학점 이상

제16조(부전공의 취소 신청)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2]부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수강지도)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학과장과 부전공학과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부전공 취소자의 학점인정) 부전공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의 기취득 학점은 일반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부전공 이수학점 미달자도 이를 인정한다.

제19조(졸업사정) 부전공 이수여부는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20조(학위수여) ① 부전공의 이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전공 과 부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② 부전공 소요학점 취득 전에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이수년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제21조(제증명) 주전공과 부전공을 모두 이수한 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는 주전공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부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제 4 장 연계전공

제22조(연계전공 개설신청) ① 연계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는 연계전공개설 신청서 [별지서식 3] 및 연계전공 교육과정편성표[별지서식 4]를 연계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및 교육과정은 ‘다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제23조(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 ①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수학점의

1.5배이상 2배수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② 편성 교과목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활용하여 편성하되, 필요 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신설 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은 영역별 최소 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분야별 교과목을 골고루 이수 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20. 3. 1.>

제24조(연계전공 이수자격 및 신청)

- ① 모든 학부(과)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연계전공의 이수의 지원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개정 2020. 7. 22.>
- ③ 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연계전공이수신청서[별지서식 5]를 재학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연계전공 주임교수로부터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개정 2020. 7. 22.>
- ④ 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연계전공이수신청서[별지서식 5]를 재학중 매학기 개시 초 정해진 기간내에 연계전공 주임교수로부터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 ⑤ 연계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취득한 해당 전공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25조(연계전공 이수 및 포기)

- ① 연계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2.>
 - 1.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과 연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 2.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과 연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 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 3. 다만, 졸업학점을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22.>
- ② <삭제 2020. 7. 22.>
- ③ 연계전공 이수 포기는 연계전공이수포기원[별지서식 6]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수를 포기한 학생이 연계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제26조 (졸업사정) 연계전공 이수여부는 ‘다전공운영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0. 3. 1.>

제27조(전공인정) 연계전공의 이수는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

제28조(학위수여) 각 연계전공의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연계전공별 지정된 학위를 수여한다.

제29조(제증명) 연계전공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여 발급 다

제 5 장 융합전공

제30조(융합전공 개설 신청) ① 융합전공은 교내·외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 등 소속교원이 참여하여 개설한다.<개정 2021. 4. 8.>

② 융합전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융합전공개설 신청서[별지서식 3]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편성표[별지서식 4]를 융합하고자 하는 교내·외 학부(과)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항개정 2021. 4. 8.>

③ 융합전공 및 교육과정은 ‘다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항개정 2021. 4. 8.>

제31조(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① 융합전공 교과과정은 특정 전공의 교육과정이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 교과과정은 관련 학과(부) 또는 전공의 기존 개설 교과목을 포함하여 편성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교육과정의 30%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3. 1.>

③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이수학점의 1.5배이상 2배수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④ <삭제 2020. 3. 1.>

제32조(융합전공 이수자격 및 신청)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개정 2020. 7. 22.>

③ 융합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이수신청서[별지서식 5]를 재학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융합전공 주임교수로부터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④ 융합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취득한 해당 전공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3조(융합전공 이수 및 포기)

① 융합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2.>

1. 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융합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2.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융합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3. 다만, 졸업학점을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20. 7. 22.>

② <삭제 2020. 6. 0.>

③ 융합전공 이수 포기는 융합전공이수포기원[별지서식 6]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수를 포기한 학생이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4조(졸업사정) 융합전공 이수여부는 ‘다전공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0. 3. 1.>

제35조(전공인정) 융합전공의 이수는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

제36조(학위수여) 각 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융합전공별 지정된 학위를 수여한다.

제37조(제증명) 융합전공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융합전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제 6 장 자기설계전공<신설 2020. 3. 1.>

제38조(자기설계전공 이수자격) ①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

② 자기설계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신설 2020. 3. 1.><개정 2020. 7. 22.>

제39조(신청절차) ① 자기설계전공 희망 학생은 재학 중 정해진 기간내에 주전공의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

1. 자기설계전공 이수신청서 [별지서식7]
2.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별지서식8]
3. 자기설계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별지서식9]
4.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표 [별지서식10]

② 자기설계 전공 교육과정은 ‘다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설 2020. 3. 1.>

제40조(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 ① 자기설계전공 편성 시 기존의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1.>

② 교육과정의 편성학점 수는 최소 42학점 이상, 최소 2개학과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 3. 1.>

③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0. 3. 1.>

④ 교과목은 개설학과의 개설시기(학년, 학기)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

⑤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육과정 변경신청서 [별지서식12]를 학사운영팀에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1.>

제41조(자기설계전공 이수 및 포기)

① 자기설계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0.>

1. 자기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자기설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2. 자기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자기설계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이수 과목이 동일한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22.>

3. 다만, 졸업학점을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22.>

② 자기설계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취득한 해당 전공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신설 2020. 3. 1.>

③ 자기설계전공 이수 포기는 자기설계전공이수포기원[별지서식 11]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수를 포기한 학생이 자기설계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중 타 학과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신설 2020. 3. 1.>

제42조 (졸업사정) 자기설계전공 이수여부는 ‘다전공운영위원회’ 사정을 걸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20. 3. 1.>

제43조(전공인정)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는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자기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신설 2020. 3. 1.>

제44조(학위수여)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자기설계전공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0. 3. 1.>

제45조(제증명) 자기설계전공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자기설계전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여 발급한다.<신설 2020. 3. 1.>

제 7 장 다전공운영위원회<장개정 2020. 3. 1.>

제46조(다전공운영위원회) ① 다전공의 운영을 위해 다전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20. 3. 1.>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계열별 약간명의 교수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연계·융합·자기설계 전공별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다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개정 2020. 3. 1.>

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3. 1.>

1.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5.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이수지도에 관한 사항

6.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이수사정에 관한 사항

7.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으로 다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부전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융합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 1. 1자로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1]

복수(부)전공 이수 인정신청서

학 과		학 번	
성 명		학 년	
이 수 회 망 전 공			
제 1전공(주전공)		제 2전공	
제 3전공		부전공	
긴급 연락처(핸드폰)	() -	연락처	() -

지도교수
제1전공(주전공) 학 과 장
제2전공 학 과 장
제3전공 학 과 장
부전공 학 과 장

위와 같이 복수(부)전공 이수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광 주 여 자 대 학 교 총 장 귀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결 재	담당	팀장	주무팀장	교무처장

(연계/융합/자기설계)전공 개설 신청서			
전공명칭		참여 전공	()학과
학위명			()학과 ()학과
전공개요			
개설목적			
졸업 후 진로		관련 자격증	
중점 교육내용			
<p>상기와 같이 (연계 / 융합) 전공 개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p> <p> <input type="checkbox"/> 제안학과 1 _____ 학과 서명 : 학 과 장 (인) 소속교원 (인) (인) </p> <p> <input type="checkbox"/> 제안학과 2 _____ 학과 서명 : 학 과 장 (인) 소속교원 (인) (인) </p> <p> <input type="checkbox"/> 제안학과 3 _____ 학과 서명 : 학 과 장 (인) 소속교원 (인) (인) </p>			

[별지서식 9]

자기설계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설계전공명	
자기설계전공 개요	
학업이수계획(2학년~4학년)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표

자기설계 전공명 (국문)		자기설계전공명 (영문)			
학위명 (국문)		학위명(영문)			
교육목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과목번호	개설학과	교과목명	학년-학기	학점	비고
학점계					

※ 다전공으로서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이수학점 요건인 43학점 내외에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며, 반드시 2개 전공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신청자 : (인)
 지도교수 : (인)

[별지서식 12]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성 명 :

학 번 :

자기설계전공명 :

변경교과목 :

<변경전>

교과구분	코드번호	교과목 명	대학	개설학부(과)	학점	비고 (추가/삭제)

<변경후>

교과구분	코드번호	교과목 명	대학	개설학부(과)	학점	비고 (추가/삭제)

변경사유 :

지도교수 검토 의견:

20 . . .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